<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No Brand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132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8. 12. 17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 02. 25	

No Brand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이마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이마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대표 전화번호 : 02-380-9192
대표 팩스번호 : 02-380-5489
가맹사업 담당부서 : [No Brand] 프랜차이즈팀 : 02-380-9192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마트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 05. 03.	2011. 05. 01.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법인등록번호	110111-4594952	**사업자등록번호**	206-86-5091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한채양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임영록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전상진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서진욱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감사	신언성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감사	김연미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감사	이상호	No Brand 외1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5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23. 03. ~ 현재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이마트24	emart24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푸조비즈니스타워 4층 (성수동2가)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2. ~ 현재	한채양	02-6916-1500	02-6916-1468
	법인등록번호	110111-3419515	**사업자등록번호**	105-86-9245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3.~ 24.06.	한채양	02-380-5123	02-380-5789
	법인등록번호	110111-0167489	**사업자등록번호**	212-81-2554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신세계푸드	자니로켓 외 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성수동2가, 백영성수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3.~ 현재	송현석	02-3397-6000	02-3397-6199
	법인등록번호	110111-0305288	**사업자등록번호**	215-81-4737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스무디킹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7층 (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12.~ 현재	송현석	02-550-2300	02-550-2301
	법인등록번호	110111-5905033	**사업자등록번호**	390-81-0021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계열회사를 합병함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에브리데이	2024.0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한채양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No Brand	No Brand™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최적의 소재와 제조방법을 찾아 가장 최저의 가격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노브랜드의 이념과 철학 당신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길
상호	No Brand OO점 (해당 점포명 표기)	

상표 (서비스표) 관련정보	No Brand	등록번호 : 40-1549217-0000 등록일자 : 2019.12.02
	No Brand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등록번호 : 41-0403178-0000 등록일자 : 2019.07.09
	No Brand	등록번호 : 41-0384334-0000 등록일자 : 2017.01.19
		등록번호 : 41-0384233-0000 등록일자 : 2017.01.18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9,141,750,840	9,693,394,883	9,448,355,956	15,053,811,467	265,917,890	774,712,462
2022년	20,129,787,392	9,708,728,742	10,421,058,650	15,486,823,898	258,855,639	1,050,709,937
2023년	20,127,035,599	9,665,534,165	10,461,501,433	15,141,873,348	187,950,656	258,789,88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노브랜드 매출액은 전체매출의 5% 내외(직영+가맹)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한채양	대표이사	2024. 03. ~	이마트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임영록	사내이사	2024. 03. ~	이마트 사내이사	회사업무총괄
	전상진	사내이사	2024. 03. ~	이마트 사내이사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서진욱	사외이사	2021.03. ~	이마트 감사위원	
	신언성	사외이사/감사위원	2021.03. ~	이마트 사외이사	
	김연미	사외이사/감사위원	2021.03. ~	이마트 감사위원	-
	이상호	사외이사/감사위원	2023.03. ~	이마트 감사위원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25,058
	3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

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이마트	가맹사업	2024.07 ~ 현재	이마트에브리데이(등록번호: 20130094) 라는 영업표지의 슈퍼마켓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사업	2014. 1~ 2024.6	이마트에브리데이(등록번호: 20130094) 라는 영업표지의 슈퍼마켓 경영
	㈜이마트24	가맹사업	2003.02~현재	이마트24(등록번호: 20080100729)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2021.06.~현재	이마트24 smart(등록번호: 20211432)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신세계푸드	가맹사업	2016.12.~2022.05.	자니로켓(등록번호: -)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2016.12.~현재	오슬로(등록번호 : 20160877)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2020.10.~현재	노브랜드버거(등록번호 : 20190929)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체결사실 없음	노브랜드피자(등록번호 : 20212085)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스무디킹 코리아㈜	가맹사업	2003. 2.~현재	스무디킹(등록번호: 20081000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계열회사의 자니로켓은 2022.05.30. 정보공개서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가맹본부는 계열회사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2024.07.01에 합병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No Brand (35류)	**No Brand**	등록일자 2019.12.02	등록번호 40-1549217-0000	㈜이마트	2029.12.02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No Brand새도형 (35류)	No Brand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등록일자 2019.07.09	등록번호 41-0403178-0000	㈜이마트	2029.07.09
No Brand (스마일도형) (35류)	No Brand	등록일자 2017.01.19.	등록번호 41-0384334-0000	㈜이마트	2027.01.19
노브랜드 신규심볼(새도형) (35류)		등록일자 2017.01.18	등록번호 41-0384233-0000	㈜이마트	2027.01.18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No Brand] 가맹사업 현황

1.〔No Brand〕를 시작한 날 : 2019년 04월 25일(1호점 오픈)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8월 25일 (직영 1호점 용인보라점 오픈))

2.〔No Brand〕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마트	No Brand	이갑수	2019.04. 25 ~ 2020.03.24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이마트	No Brand	강희석	2020.03.25 ~ 2024.03.28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이마트	No Brand	한채양	2024.03.29 ~ 현재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3.〔No Brand〕 업종

영업표지	업종	
No Brand	대분류	소분류
	도소매	특정 브랜드 상품전문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No Brand]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76	48	228	260	48	212	255	48	207
서울	22	0	22	20	0	20	20	0	20
인천	16	2	14	15	2	13	14	2	12
부산	3	0	3	3	0	3	3	0	3

대구	10	9	1	10	9	1	10	9	1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8	1	17	15	1	14	14	1	13
울산	8	3	5	7	3	4	7	3	4
세종	5	0	5	5	0	5	5	0	5
경기	119	3	116	112	3	109	111	3	108
강원	11	5	6	11	5	6	11	5	6
충북	6	2	4	5	2	3	5	2	3
충남	17	1	16	17	1	16	16	1	15
전북	4	3	1	4	3	1	4	3	1
전남	1	0	1	1	0	1	1	0	1
경북	20	13	7	20	13	7	20	13	7
경남	15	5	10	14	5	9	13	5	8
제주	1	1	0	1	1	0	1	1	0

5. 바로 전 3년간 [No Brand] 가맹점 수 변동현황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49	0	0	1	4	48	-1
2022	48	0	0	0	2	48	0
2023	48	0	0	0	1	48	0

6. [No Brand]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No Brand] 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관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20130094	기타도소매	24/229	25/232	23/230
	㈜이마트	이마트	20130094	기타도소	24/229	25/232	23/230

계열회사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매			
	㈜이마트24	이마트24	20080100729	편의점	5,756/62	6,176/53	6,348/53
	㈜이마트24	이마트 24smart	20211432	편의점 (무인기반)	34/0	135/0	192/1
	㈜신세계푸드	자니로켓	20160840	패스트 푸드	6/14	0/6	0/0
	㈜신세계푸드	오슬로	20160877	아이스크림/빙수	6/2	6/1	6/1
	㈜신세계푸드	노브랜드버거	20190929	패스트푸드	117/52	138/49	169/29
	㈜신세계푸드	노브랜드피자	20212085	피자	0/0	0/2	0/4
	스무디킹코리아㈜	스무디킹	2008100066	과일음료	297/8	260/6	175/5

▶ 계열회사의 자니로켓은 2022.05.30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가맹본부는 계열회사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2024.07.01에 합병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를 기초로 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매출액은 48개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평균매출액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노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년	48	1,50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비공개)	2023. 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2023. 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3. 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3. 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3.0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합계		7,027,394	74,495	6,952,899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이마트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비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접수→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宣告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No Brand]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회사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비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일	미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제공 형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보증금	100,000	근저당권, 예금질권, 보증보험, 중 택1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채권채무 발생 시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보험)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100,000	근저당권, 예금질권, 보증보험 중 택 1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기초 투자비용

(단위: 천원, 330㎡(100평)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당 (3.3㎡)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전산장비 (네트워크 /POS)	본부투자	38,500		-	미반환	-
간판/사인물	본부투자	19,400		-	미반환	
인테리어 (내외부공사)	가맹점사업자 자율선정	198,000	1,980			별첨1 참조
영업장비/집기	가맹점사업자 자율선정	220,000				쇼케이스, 곤도라 등
도난방지	가맹본부 지정 협력회사	11,000				
CCTV	가맹점사업자 자율선정	13,200				
방송장비	가맹점사업자 자율선정	5,500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110,000		상품발주전	정산 후 잔액 반환	매장 면적 별 상이
소모품비	가맹본부	7,700		상품발주전	정산 후 잔액 반환	
도면비 및 감리비	가맹본부	11,000	110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를 하는 경우
총계	가맹본부	634,300	6,343			

※ 위 표의 금액 중 전산장비 및 간판/사인에 대해서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인테리어 및 영업장비/집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점포 임차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담주체**			**비고**
		N타입	**R1타입**	**R2타입**	**R3타입**	
개점 비용	점포 임차비용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70 :30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60 :40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50 : 50	보증금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간판/VMD/POS 장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가맹본부	가맹본부	
	영업용 장비 설비 비품 비용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 투자 비	가맹비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보증금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현금/보증보험
	초도 상품대금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매장별 상이
	소모품 준비금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매장별 상이

▶ 귀하가 선택한 타입에 따라 정산금(로열티)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점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관련 인허가비용 등

(단위: 천원)

구분	주무관청	금액	지급기한	비고
사업자 등록 (주류판매업)	관할 세무서	실비		
기타식품판매업	관할 지자체	실비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관련 교육기관	실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할 지자체	실비		건강기능식품 취급점
	관련 교육기관	실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관할 지자체	실비		자동판매기 운영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할 지자체	실비		
옥외광고물 신고	관할 지자체	실비		신고대상 광고물 운영점
전기 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실비		개별전기사용 점포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필요 인허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 명의의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자(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신규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 이수 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점포 선정에 있어 당사가 가맹점 입지를 소개할 수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매니저)	가맹점사업자 포함 4인 교육 참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스태프	-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No Brand]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체적인 물품은 점포 사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영업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비는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비고
N 타입	로열티	가맹본부	순매출 총이익액의 21%	익월 15일	중도 가맹계약 해지 시 일할계산	수수료	
	건물임차료	임대인	실비	-	미반환	사용	
	건물관리비	임대인	실비	-	미반환	사용	
R1 타입	로열티	가맹본부	순매출 총이익액의 35%	익월 15일	중도 가맹계약 해지 시 일할계산	수수료	
	건물임차료	가맹본부	건물임차료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건물관리비	가맹본부	건물관리비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R2 타입	로열티	가맹본부	순매출 총이익액의 30%	익월 15일	중도 가맹계약 해지 시 일할계산	수수료	
	건물임차료	가맹본부	건물임차료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건물관리비	가맹본부	건물관리비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R3 타입	로열티	가맹본부	순매출 총이익액의 25%	익월 15일	중도 가맹계약 해지 시 일할계산	수수료	
	건물임차료	가맹본부	건물임차료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건물관리비	가맹본부	건물관리비 50%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공통	수도 광열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물류비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제주도 내 점포에 한함
전산 서비스 이용료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서비스이용료	
통신비 (전화, 인터넷)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서비스이용료	
보험료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냉동장비 알람		주식회사 대단	실비	지정일	미반환	서비스 이용료	(지정업체)
보수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을 요

						청한 경우
무인경비 용역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방역서비스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재고조사 비용	가맹본부	실비	요청 시	미반환	사용	정기조사 외의 희망자에 한함
세무대리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서비스이용	희망자에 한함
신세계포인트 적립수수료	가맹본부	고객 적립포인트의 5%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신세계포인트 사용수수료	가맹본부	고객 사용 포인트의 1.5%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제휴포인트 사용수수료	각 제휴사	각 제휴사별 상이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신용카드 수수료	각 카드사	각 카드사별 상이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SSG Pay 수수료	협력업체	결제수단 별 상이 (신용카드/머니/은행)	익월 15일	고객 구매 상품 반환 시		
알리/위쳇 Pay 수수료	협력업체	고객 사용액의 1.7%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제로 PAY 수수료	각 제휴사	각 제휴사별 상이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카카오 PAY 머니	협력업체	고객 사용액의 2%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스마일 PAY	협력업체	결제수단 별 상이 (신용카드/머니/은행)	익월 15일	결제 취소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개별 청구	각종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순매출총이익 = 총매출 – 에누리 – 부가세 – 매출원가

▶ 당사는 점포 임차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N타입, R1타입, R2타입, R3타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 비율이 달라집니다.

▶ 점포 운영 시 상기 조항外 별도 비용 발생 가능하며,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고객 요청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일반전화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 관련

- 정산금

당사는 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은 가맹본부로 입금되며, 당사는 매월 단위로 가맹점의 영업실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금액을 계산하여 익월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산금) = (매출) – (로열티) – (상품대) – (결제수수료)
– (전산수수료) – (유니폼비용 등)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재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갱신 혹은 재계약 이후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No Brand]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당사의 로고가 인쇄되어있는 제품 일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 구매한 물품은 반품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물품의 보관상태 및 훼손정도,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반품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No Brand]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당사는 도소매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No Brand]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신세계 아이앤씨	계열회사	전산시스템 사용료	199,590	2023년 기준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No Brand]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No Brand]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No Brand]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가 추천하는 상품 및 영업활성화 MD에 따른 상품·용역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상품·용역명</th><th>제한내용 및 요건</th><th>위반 시 책임</th><th>비고</th></tr>
<tr><td>특화
MD</td><td>PL상품, 상권 별 필수상품 등 당사의 사업 특성 및 개성을 나타내는 상품</td><td rowspan="3">- 본 표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용역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td><td rowspan="3">1회 위반: 서면 통보
2회 위반: 서면 통보
3회 위반: 계약 해지</td><td rowspan="3">가맹사업법상의 해지 절차 준용</td></tr>
<tr><td>추천
상품</td><td>신상품, 다양한 상품 구성 등 상권에 적합한 상품</td></tr>
<tr><td>거래선
지정상품</td><td>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추천한 거래선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용역</td></tr>
</table>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가맹본부는 우선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가능한 대체 상품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상품 이외의 경우 행정관청 및

공인기관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No Brand]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청소년 유해약품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등 • 청소년 유해매체(성인지 등) 법률로 지정된 상품·용역	본 표에 기재된 상품 및 용역 판매금지	당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법률준수사항으로 계약서상 명시없음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No Brand] 가맹본부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고
전체 판매상품	영업시스템에 등록된 표준 판매가격	시스템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통일성 및 고객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당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No Brand상품 전문점	No Brand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기존 [No Brand] 가맹점 · 직영점 기준 반경 300m 이내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 안됨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병원, 터미널, 주유소, 공항, 호텔 등)의 경우 위 기본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간주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계약서 별지도면 첨부)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② 직선거리 300m 이내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③ 직선거리 300m 이내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간 명의변경 (양수도 포함) 하는 경우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2.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기존 직영점 · 가맹점 소재지 기준, 신규 가맹점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측정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No Brand]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기타도소매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상품 일부	
편의점	㈜이마트24	노브랜드 상품 일부	

▶ 향후 유통채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몰	(주)에스에스지닷컴	www.ssg.com	노브랜드 상품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	www.gmarket.co.kr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	www.auction.co.kr		

▶ 향후 온라인 판매 채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4%	79.5%	0%	10.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구분	기간	갱신
계약기간	5년	5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항에서 정하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합니까? ☞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 예 → B, 아니오 → A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예 → C, 아니오 → 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 예 → B, 아니오 → 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예 → E,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 변경(필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 상 별다른 관련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서 관련 조항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사의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 관련 조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8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38조 1항 2호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의 [POS 등 설비 및 기기]규정을 위반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의 [영업의 표준화 및 물품공급 등에 대한 사항]규정을 위반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의 [물품의 주문 등]규정을 위반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재고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8조 1항 2호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3호
○기타 본 계약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계약서 관련 조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 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①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정하는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양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위에 예시한 기간은 통상적인 소요기간으로, 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와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개점 교육 등을 이수하고 해당 가맹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경업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가 정하는 [No Brand]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 ~ 22:00 까지 (1일 12시간)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3일

▶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해, 해당 지자체 별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영업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 15조 제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점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와 사전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 / 2주일	
신상품 정보교육	담당자 매장 방문 → 신상품 안내 및 교육 → 발주 안내 → 완료	1회 / 2주일	슈퍼바이저
결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결품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 / 2주일	
정기 재고조사	담당자 매장 방문 → 재고 조사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년 / 1회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외 추가 재고조사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 광고, 제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등)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광고 성격</th><th colspan="2">부담비율</th><th rowspan="2">분담절차</th><th rowspan="2">비고</th></tr>
<tr><th>본부 부담</th><th>가맹점 부담</th></tr>
<tr><td rowspan="5">광고</td><td colspan="2">브랜드광고</td><td rowspan="3">100%</td><td rowspan="3">없음</td><td rowspan="3"></td><td rowspan="3">각종 광고, 홍보 등</td></tr>
<tr><td colspan="2">상품광고</td></tr>
<tr><td colspan="2">가맹점모집광고</td></tr>
<tr><td rowspan="2">점포광고</td><td>정기</td><td>100%</td><td>없음</td><td></td><td></td></tr>
<tr><td>비정기</td><td>없음</td><td>100%</td><td>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必</td><td></td></tr>
<tr><td rowspan="2">판촉행사</td><td colspan="2">오픈 판촉행사</td><td>100%</td><td>없음</td><td></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기타 판촉행사</td><td colspan="2">행사 별 상이</td><td>행사 별 사전 공지必</td></tr>
<tr><td rowspan="2">신용카드 제휴</td><td colspan="2">포인트 적립</td><td>-</td><td>100%</td><td>신용카드 수수료 합산 부과</td><td>포인트제휴 추가 시 별도 안내</td></tr>
<tr><td colspan="2">포인트 사용</td><td>-</td><td>-</td><td>-</td><td>카드사 전액 부담</td></tr>
</table>

※ 멤버쉽 제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가맹점 별로 별도 안내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사에 대한 신용 저해 비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영업비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 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 시점부터, 계약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유 및 부담	계약서 해당 조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9조(계약종료 후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39조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1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40조(비밀유지), 제39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조문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의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43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3조

2) 해약금 (가맹계약서 제37조)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경우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며 이때 양 당사자는 해약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약을 요청한 당사자는 간판비용이나 기타 상대방이 기 지출한 비용은 정산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_

▶ 당사는 개점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받거나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초도상품대금과 소모품 준비금,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초도상품 중 신선식품, 일배식품(냉장, 냉동상품) 중 계약해지로 인하여 판매불가하여 발생된 폐기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반환금액 중에서 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폐기과정 및 금액을 함께 확인하기로 합니다.

▶ 귀하가 개점 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홈페이지 등	55일 내외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직영점 리스트 제공	- 정보공개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직영점 확인	제공일로부터 14일(7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 14일 전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계약금) 납입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1일	
점포 계약	- 점포 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 분석	-	
점포 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면적 계산	3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추가공사 도면 협의	3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약 2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진열	약 2일	
교육	- 아르바이트 교육, 가맹점사업자 교육	약 15일	
오픈	- 사전 점검 - 총평	D-day	

※ 상기 일정은 가맹점사업자 및 점포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 이전에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한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부담액의 30%, 3차:2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 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 방문 → [가맹본부]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서면)	가맹본부 부담	필요 시
가맹점 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경영지도계획서(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서면)	가맹점사업자 부담	필요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No Brand]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가맹점 사업자 (매니저)	회사소개, 사업개요, 점포 운영 업무, 상품교육 등	집합교육 2일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2일 전 까지	(필수)
	시스템, 매장운영, 서비스 실습	현장 교육 13일		
스태프	회사소개, 사업개요, 상품교육 등	현장 교육 1일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2일 전 까지	(선택)
	매장운영, 서비스 실습	현장 교육 3일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No Brand]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비고
보수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현장교육	-
서비스 교육	고객서비스 및 준법위생 교육	현장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하거나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

점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 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15일 (8시간)	없음	(최초 계약 시)
정기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없음	-
보수 교육	별도 협의	실비	가맹사업자 요청 시
서비스교육	별도 협의	협의	-

▶ 당사는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개점 전 교육비와 정기교육비 등 교육비 전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숙박비. 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제 3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매장근무자의 교육성적이 미흡하여 점포의 경영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 하여 재교육/재시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별첨3 참조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5년 7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영업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직영점은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영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No Brand] 프랜차이즈팀 (02-380-91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 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 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식회사 이마트	영업표지	No Brand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 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 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식회사 이마트	영업표지	No Brand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별첨 1. 인테리어 관련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영업용 집기/장비, 소모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직영점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재무제표(2021년 ~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